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810호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362 호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 획 예 산 과	2
○ 공 고 제 1364 호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건 강 증 진 과	25
○ 공 고 제 1365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식 품 위 생 과	36
○ 공 고 제 1368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37
○ 공 고 제 1373 호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건 강 증 진 과	39

고 시

○ 고 시 제 86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50
○ 고 시 제 87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52
○ 고 시 제 88 호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미한)변경 고시	도 시 재 생 과	54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362호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24.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남동구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확보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변경 및 설치주체 명확화 (안 제6조, 제8조)
 -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 수탁기간선정심의위원회(소관부서)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강화 (안 제9조)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설 (안 제11조)
- 계약 체결시 공증의무 조항 삭제(안 제12조)
- 수탁기관 예산지원 조항 신설(안 제13조)
- 수탁기관 의무조항 신설(안 제14조)
- 수탁기관 성과평가 완료기간 단축(안 제19조)
- 수탁기관 위탁계약 해지사유 조항 신설 (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기획예산과
- 연 락 처 : 전화 453-2055, FAX 453-205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 요망)

4. 조례(안) : 붙임참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동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하되**”를 “**위탁사무 소관부서에서 구성하되**”로,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를 “**자동으로 해산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으로,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계공무원(단,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구의원
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제2항 중 “민간위탁”을 “위탁사무 소관부서”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기관은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해야 하며, 계약 내용은 공증을 해야”를 “체결하여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사무편람을 작성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6조) 제1항 본문 중 “60일”을 “90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구의 지도·감독 및 감사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 ----- 수탁기 관선정심의위원회-----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② ----- --- 위탁사무 소관부서에서 구 성하되--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 ----- ----- 다음 각 호의 사람 --- ----- -----.
<신설>	1. 관계공무원(단,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 구의원

<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

② (생 략)

제10조(간사)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간위탁 업무 담당으로 한다.<신 설>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탁사무 소관부서 -----.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11조(계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

1. ~ 7. (생략)

② (생략)

<신설>

<신설>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계약체결 등) ① -----

----- 체결하여야 -----
-----.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제12조 ~ 제14조 (생 략)

<신 설>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
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
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기관은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
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
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
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
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
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 제17조 (현행 제12조부
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18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
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

제15조 (생 략)

제16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설>

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사무편람을 작성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20조(성과평가) ① -----

----- 90일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구의 지도·감독 및 감사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

형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받은 경우

5. 그 밤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
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
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확보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변경 및 설치주체 명확화 (안 제6조, 제8조)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강화 (안 제9조)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설 (안 제11조)
- 계약 체결시 공증의무 조항 삭제(안 제12조)
- 수탁기관 예산지원 조항 신설(안 제13조)
- 수탁기관 의무조항 신설(안 제14조)
- 수탁기관 성과평가 완료기간 단축(안 제19조)
- 수탁기관 위탁계약 해지사유 조항 신설 (안 제21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17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동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하되”를 “위탁사무 소관부서에서 구성하되”로,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를 “자동으로 해산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으로,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계공무원(단,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구의원
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제2항 중 “민간위탁”을 “위탁사무 소관부서”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기관은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해야 하며, 계약 내용은 공증을 해야”를 “체결하여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사무편람을 작성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6조) 제1항 본문 중 “60일”을 “90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구의 지도·감독 및 감사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u>민간위탁적격자</u> <u>심의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 수탁 <u>기관선정심의위원회</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u>민간위탁적격자</u> <u>심의위원회</u> 의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남동구 민간위탁적격자</u> <u>심의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u>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u> 의 설치) ① ----- ----- ----- -- <u>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u>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u>해산되는 것으로 본다</u> .	② ----- -위탁사무 소관부서에서 구성하되-- <u>자동으로 해산한다</u>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u>위원장</u>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u>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u>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 <u>위원장과 부위원장</u> 각 -- ----- ----- <u>다음 각 호의 사람</u> ----- -----.
<신설>	1. <u>관계공무원(단, 전체위원의</u>

<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

② (생 략)

제10조(간사)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간위탁
업무 담당으로 한다.<신 설>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
니된다)2. 구의원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건축사·공인노무사 또는 세
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
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
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
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
직 중인 사람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
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람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탁사무
소관부서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
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

제11조(계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

1. ~ 7. (생략)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계약체결 등) ① -----

----- 체결하여야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신설>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기관은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

제12조 ~ 제14조 (생략)

<신설>

제15조 (생략)

제16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 제17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18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사무편람을 작성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20조(성과평가) ① -----

90일 -----

-----.

-----.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구의 지도·감독 및 감사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364호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7. 24.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제5조를 반영하여 금연 지정 가능 장소를 추가하여 지역사회 금연분위기 조성

2.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삭제 (안 제4조제1항)**

- 어린이놀이터

○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 추가 (안 제4조제1항)

- 의료기관 출입구 10미터 이내의 지역

-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달린 3-4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건강증진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연 락 처 : 전화 453-5101, FAX 453-511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 요망)

4. 참고사항

-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반영하여
금연 지정 가능 장소를 추가하여 지역사회 금연분위기 조성

☐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삭제 (안 제4조제1항)
 - 어린이놀이터
-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 추가 (안 제4조제1항)
 - 의료기관 출입구 10미터 이내의 지역
 -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말한다)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

9.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달린 3-4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제6조제1항 전단 중 “안내표지판을”을 “안내표지판 등 안내표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1항 중 어린이놀이터, 제4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 5. (생략) <신설> <신설> 8. (생략) ② ~ ④ (생략)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 -----. 1. ----- ----- -----말한다) 2. ~ 7. (현행과 같음) 8. <u>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u> 9. <u>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달린 3-4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u> 10.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u>안내표지판</u> 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u>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u>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 ----- ----- ----- <u>안내판표지판</u> 등 <u>안내표지</u> 를 ----- . <후단 삭제>

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으로 한다)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 중 어린이놀이터, 제4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

② ~ ④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

② ~ ④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 6. 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9., 2008. 2. 29., 2010. 1. 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2021. 12. 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7. 12. 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목개정 2016. 12. 2.]

□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5. 주요도로 및 특화거리
 6.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7. 삭제
 8.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9.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10.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11.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12.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조신설 2020.10.07.]
-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10.07.>]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청 공고 제2023-1365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직권말소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 권 말 소 일 자 : 2023. 08. 08.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3. 07. 24. ~ 2023. 08. 07.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직권말소일)
일반음식점	2017-0199443	카페 디아커피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42-1, 1층 전부호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3-07-01	2023-08-08

6. 고 지 사 항

- 본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청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4

2023. 7. 24.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남동구청 제2023-1368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무단전출, 소유자 미상,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 7. 24.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3.7.24. ~ 2023.8.12.
3. 공 고 대 상 : 88며0235 외 4대
4. 공고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자진처리명령서 반송 내역서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남동구)	수취인명	주 소	발송일자 (1,2차)	미배달사유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비고
1	2022-00071	88머0**5	포터II내장탑차 (PORTERII)	하촌로45번길 12	정*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번길 1*-5, *0*호(주안동, **빌라)	2022.4.11.~2022.4.26. 2023.5.3.~2023.5.18.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2022.4.7.	주한신폐차	032-590-6940	
2	2022-00306	52구6**2	그랜저 (GRANDEUR)	구월동 1199-9	SUN *****NG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로 *8, A동 **2호	2022.12.8.~2022.12.26. 2023.7.7.~2023.7.22.	폐문부재 폐문부재	2022.11.14.	주한신폐차	032-590-6940	
3	2022-00317	60어4**6	옵티마	남동대로 668, 남동경찰서 주차장	N***EN ***** TIEN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림로**번길 1* (신촌동)	2022.12.8.~2022.12.26. 2023.7.7.~2023.7.22.	수취인불명 수취인불명	2022.11.25.	주한신폐차	032-590-6940	
4	2022-00318	23다8**3	토스카 1.8 DOHC	남동대로 668, 남동경찰서 주차장	*** ALBERT	경상남도 진해시 진영읍 진산대로**번길 *8-*, 2**호	2022.12.8.~2022.12.26. 2023.7.7.~2023.7.22.	폐문부재 폐문부재	2022.11.25.	주한신폐차	032-590-6940	
5	2022-00331	63보9**3	스파크밴 1.0 DOHC	만수동 988-5	곽*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로 1**, **5호(도화동, **타운)	2022.12.8.~2022.12.26. 2023.7.7.~2023.7.22.	폐문부재 미확인	2022.11.28.	주한신폐차	032-590-694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3-1373호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7. 24.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기준을 변경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기준 변경 (안 제7조제1항)**

- 1일(4시간)당 주간 4만원, 야간 6만원 → 예산의 범위 내 지급

○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신설 (안 제9조)**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건강증진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연 락 처 : 전화 453-5101, FAX 453-511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 요망)

4. 참고사항

-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기준을 변경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기준 변경 (안 제7조제1항)
 - 1일(4시간)당 주간 4만원, 야간 6만원 → 예산의 범위 내 지급
-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신설 (안 제9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1일(4시간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를 “활동수당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활동수당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산정하며,”를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활동계획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를 말한다),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활동수당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활동지원) ① ----- ----- 활 동수당을 ----- ----- -----. ----- ----- ---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②·③ (생략)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활동계획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증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3. 17.>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30.>

1.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2.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6. 6. 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채용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채용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채용에 관련된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한다. 이 때 공고문은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공모절차를 거쳐야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기관의 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위촉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구역범위) ① 위촉기관의 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위촉기관의 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위촉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최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 기준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 ① 위촉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촉 기관의 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8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20.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622 (남촌동) 외 4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승기천로 34 (고잔동)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5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18-9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622 (남촌동)	2009.7.10.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의 아들인 비류가 남하하여 세운 나라에서 이름에서 유래	2023.7.2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비류대로 62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22를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5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568-45 (남촌동)	2009.11.16.	간석오거리에서 남동공단까지 남동구 전체를 통과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23.7.2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대로 568-45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68-45를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39-13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65번길 14-18 (구월동)	2009.11.16.	호구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6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3.7.2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호구포로765번길 14-1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4-18을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0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4번길 19-8 (구월동)	2009.11.16.	문화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3.7.2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문화서로4번길 19-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9-8을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40-47, 140-3, 140-46, 140-48, 140-49, 140-53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신상로 160 (수산동)	2009.11.16.	옛 지명인 경신마을 위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인용하여 제명	2023.7.2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경신상로 160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0을 건물번호로 부여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승기천로 34 (고잔동)	2023.7.20.	건축물대장 말소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8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21.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로139번길 19-9 (논현동)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61-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139번길 19-9 (논현동)	2011.3.24.	에코중앙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3.7.21.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에코중앙로139번길 19-9 기초구간에위치하여19-9를 건물번호로부여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88호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남동구 고시 제2023-45호(2023.4.5.)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 7. 24.

남 동 구 청 장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이웃사촌과 3生하는 꽃피는 남촌

나. 위 치: 남동구 남촌동 354-1번지 일원

다. 면 적: 210,853m²

라. 사업기간: 2023년~2026년

마. 사 업 비: 322.48억원

- 마중물사업: 240억원(국비 120억/시비60억/구비60억)
- 지자체사업: 36.78억원
- 부처연계사업: 1.25억원
- 공기업사업: 32.45억원
- 민간투자사업: 12억원

2. 계획의 목표

비전



목표

로컬브랜드 육성, 혁신인프라 구축, 민관산학 참여로
自生(자생), 相生(상생), 再生(재생)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강소(強小) 지역 육성!**

3. 도시재생사업 계획 및 파급효과

가. 사업구상도(변경)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구분	단위사업	사업내용
[로컬브랜드 육성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자생(自生), 상생(相生), 재생(再生)]	1. 희망꽃 창작소	· 상권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 · 남촌 로컬푸드(수제두부, 수제청, 꽃식초 등) 제작 및 홍보·판매소 · 상권기획자·전문기획으로 남촌 골목상권 활성화「남촌상권발전소」 · (지자체)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2. 꽃피는 남촌가(街)	· 가로환경정비 (안심먹거리 길 조성) · 상생상가 리모델링(민간투자) · (연계사업)남촌동로 전선정리사업(한전) · (지자체)간판정비사업 · (지자체)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3. 이웃사촌 어울마당	· 이웃사촌 어울마당(1) 조성(공영주차장 부지) - 상부 휴게공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공간 조성 - 하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추가 면수 확보 · 이웃사촌 어울마당(2) 조성(남촌 어린이공원 부지) - 체험형 어린이공원 조성(물놀이형 수경시설 등) -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및 성과관리 용역(변경)
	4. 남촌 달맞이길 (둘레길조성)	· 이웃사촌 건강길 조성 - [1구간] 불거리가 있는 산책길 조성 - [2구간] 공영주차장 진입로와 연계하여 소통길 조성 ⇒ 불법주차방지 및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 [3구간] 도로 조성(확장)하여 주차 및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 · 안심·스마트 통학로 조성 - 재난대응형 스마트 통학안전시설물 설치로 통학 환경개선

※ 향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다. 파급효과

- 로컬브랜드 육성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경제프레임 구축
-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쾌적한 소비환경조성 및 노후환경 개선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종류	단위사업명	사업비	위치	면적(규모)	사업내용	비고
공동이용시설	희망꽃창작소	69.14	남촌동 340외 1필지	1,027.7	상권발전소, 두부제작소 등	(변경)
주차장	이웃사촌 어울마당	53.2	남촌동 357-1	5,358	주차장, 문화·휴게공간 조성	(변경)
어린이공원	이웃사촌 어울마당	45	남촌동 376	5,994	체험형 어린이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	
도로	꽃피는 남촌가	6.6	남촌동로 일원	연장 560m (가로 230m, 세로 330m)	바닥정비, 골목가로환경 정비	
도로	남촌 달맞이길	61.1	남촌동 일원	연장 700m 연장 300m	바닥 정비, 노상주차장 설치	

5. 예산집행계획(변경)

구분	단위사업		총 사업비	도시재생 재정보조		자체 지방비	기타		부처 연계	단계별 자원 투입					비고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 투입	'23	'24	'25	'26	
	(소 계)		322.48	120	120	36.78	32.45	12	1.25	25.04	34.77	34.01	143.55	85.11	
마중물 사업	로컬 브랜드 육성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자생(自生), 상생(相生), 재생(再生)	1. 희망꽃 창작소	69.14	34.57	34.57					6.3	13.5	2	19.14	28.2	
		2. 꽃피는 남촌가(街)	6.6	3.3	3.3						0.4	2	4.2		
		3. 이웃사촌 어울마당	103.16	51.58	51.58						3	4	43.36	52.8	
		4. 남촌 달맞이길 (둘레길조성)	61.1	30.5	30.6						6.46	2.8	51.84		
	지자체		36.78			36.78				15.78	4	7	7	3	
	부처연계		1.25						1.25	1.25					
	공기업		32.45				32.45			1.71	7.41	10.21	12.01	1.11	
	민간							12				6	6		

6.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계획(변경)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비(억원)									사업 기간
				계	도시재생재정보조		부처연계		자체	공기 업	기 금	민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 비	지방 비				
총 합계				322.48	120	120	0.57	0.68	36.78	32.45		12	'23~26
마중물 사업	합 계			240	120	120							
	[로컬브랜 드 육성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자생(自生), 상생(相生), 재생(再生)]	1. 희망꽃 창작소	HW	69.14	34.57	34.57							'23~25
		2 꽃피는 남촌 가(街)	HW	6.6	3.3	3.3							'23~25
		3. 이웃사촌 어울마당	HW	103.16	51.58	51.58							'24~25
		4. 남촌달맞이길 (둘레길 조성)	HW	61.1	30.5	30.6							'23~25
부처연계 사업	합계			1.25			0.57	0.68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도시재생 공동체 여성친화 역량강화사업(여가부)				0.04			-	0.04				'21~
		도시재생뉴딜사업 범죄예방컨설팅(경찰청)						-	-				'21~
		다함께돌봄사업(복지부)			1.21			0.57	0.64				'21~
지자체 사업	합계			36.78					36.78				
	희망꽃창작소 SW			15					15				'22
	새남촌 공영주차장 정비사업(도시재생과)			4.6					4.6				
	남촌다목적체육관 정비사업(체육진흥과)			9.0					9.0				'22
	간판정비지원사업(도시경관과)			2.0					2.0				'23~'26
	LED 주소판 설치(토지정보과)			0.1					0.1				'22~'26
	소상공인 컨설팅사업(생활경제과)			0.08					0.08				'22~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방재하수과)			1.0					1.0				'23~'26
	POSCO와 함께하는 가가호호 프로젝트(도시재생과)			5.0					5.0				'23~26
공기업	합계			32.45						32.45			
	생동감프로젝트(인천도시공사)			0.6						0.6			'22
	우리집1만호 임대주택(인천도시공사)			22.9						22.9			'20~23
	공중케이블정비사업(한국전력공사)			3.4						3.4			'22~
	수선유지사업(LH)			5.55						5.55			'22~26
민간	합계			12						-		12	
	주택내부 집수리사업(포스코건설)			-						-			'23
	꽃피는 남촌가(상가리모델링)			12								12	'23~
	도시혁신스쿨(포스코건설)			-						-			'23

7.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구분	주체	시기	내용
자체 성과관리	남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남동구 전담부서	연2회 (상반기/하반기)	·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 점검 · 활성화계획의 효과 및 성과를 가시적으로 평가
국토교통부 성과평가	국토교통부/ 남동구	연1회	· 매년 평가항목, 평가 방법 등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광역 지자체에 배포 · 재난대응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재난재해 적용 기술에 대한 실시간 현황 및 모니터링 선제적 대응 ·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 사업지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8. 도시재생특별법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없음

9. 관련서류 열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장소
 -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803)
 - 남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032-473-7169)